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08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수진・김준혁・송옥주

김문수 · 소병훈 · 박홍근

박해철 • 전종덕 • 추미애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의원 인증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
	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
	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
	<u>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u>
	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
	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
	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
	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
	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
- ⑥ 국회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의원 인증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